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시본부



수신자 수신자참조

(경유)

제목 제조업 등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심사·확인 제도 안내 및 협조 요청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.
2.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(유해·위험 방지계획서의 작성·제출 등)에 의거하여 ①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의 13개 업종(붙임 참조)에 따른 건설물·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·이전, ② 그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또는 5대 대상설비*를 설치·이전·변경하는 경우 우리 공단으로 제조업 등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·제출하여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야 합니다.
* 용해로(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), 화학설비, 건조설비, 가스집합 용접장치, 허가·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
3. 이에, 제조업 등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사업장의 미(지연)제출 예방을 위하여, 업무수행 관련으로 사업장 방문 시 미제출 및 추정 사업장으로 판단될 경우, 우리 공단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※ 방지계획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시 과태료(1,000만원 이하)가 부과 될 수 있음.

붙임 : 제조업 등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제도 안내 1부. 끝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시본부장



수신자 부산관내 안전관리 전문기관 7개소, 부산관내 보건관리 전문기관 8개소, 안전위탁사업 수행기관 9개소 등 24개소

주임 강영란 차장 이용근 사업총괄부장 전결 03/31 진찬호

협조자
고객결재

시행 사업총괄부-1590 (2020.03.31.) 접수 ()

우 46274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1763번길 26 (근로복지공단, 안전보건공단 합동청사) http://www.kosha.or.kr

전화 051-520-0509 /전송 051-520-0519 / young_rai@kosha.or.kr / 비공개(7)

대표번호 052)703-0500 1644-4544 http://www.kosha.or.kr /고객참여

o 공단 업무 관련 인권침해, 갑질, 금품수수, 부정청탁 등 신고(전화 052-2458-114, 공단홈페이지-민원-신고센터)